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 공포 및 시행

○ 공포일 : 2016. 8. 4, 시행일 : 2017. 2. 4

■ 개정이유

○ 도급 확인요청 통지 및 회신의 방법과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건설업 기술인력의 요건 완화(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의 실무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 도급계약 등의 통지·회신의 방법 등(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신설)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에는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 착수·완성의 시기 등 도급계약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도급받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도급 및 하도급 내용의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고, 통지 및 회신에 따른 서면은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규조문대비표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p>
<p>[별표 2. 비교]</p> <p>1. 기술능력</p> <p>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별표2. 비교]</p> <p>1. 기술능력</p> <p>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6조의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제26조의3에서 이동]</p>	<p>제26조의4(계약 추정외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본조신설 2016.8.4][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7로 이동]
<p><신 설></p>	<p>제26조의5(계약 추정외의 통지 및 회신 방법)</p> <p>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p>
	<p>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4]</p>
<p>〈신 설〉</p>	<p>제26조의6(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후단 삭제〉</p> <p>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p>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

(법률 제13878호, 대통령령 제27335호)

■ 공포 및 시행

- 공포일 : 2016.1.27, 2016.7.12
- 시행일 : 2016.7.28

■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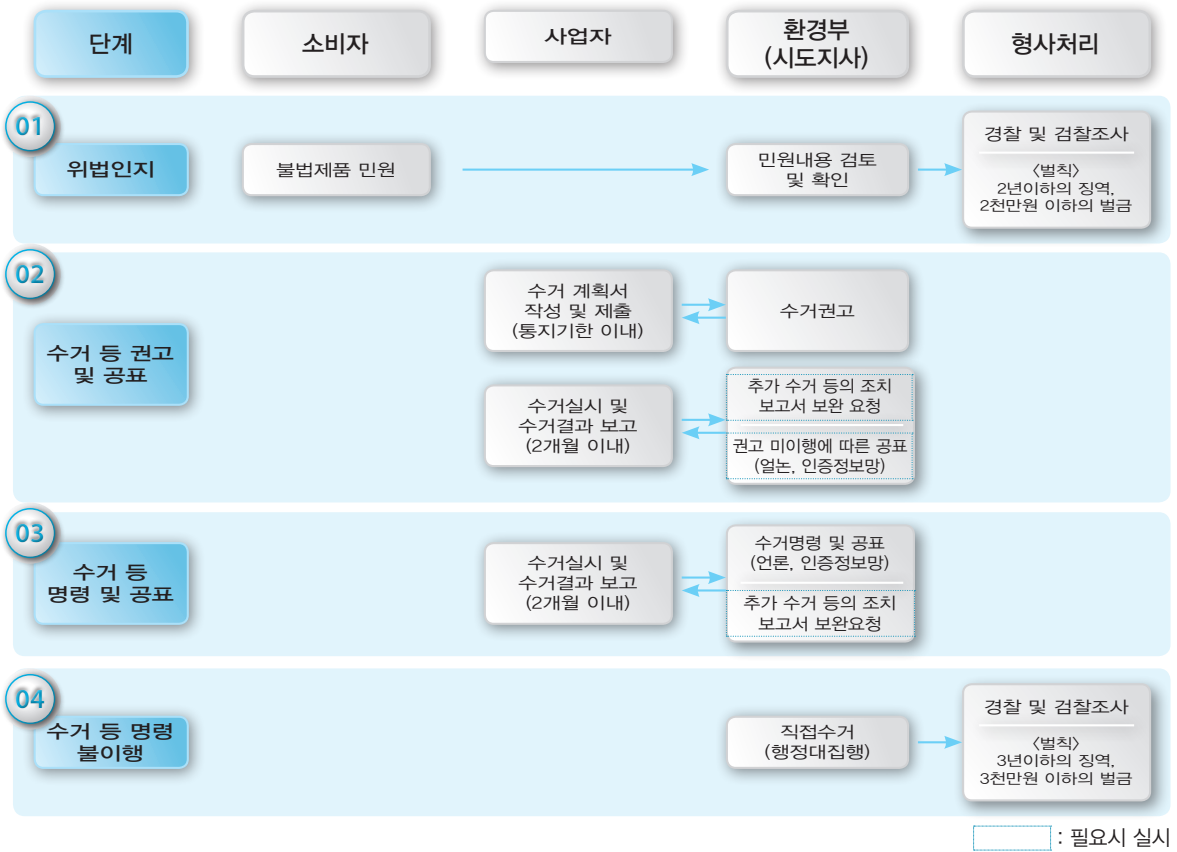
- 수도용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 제품 등의 수거 등 권고·명령 실시 (행정절차)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14조제2항) → 수거 등의 권고(제14조의 3) → 수거 등의 명령 및 공표(제14조의 4) → 행정대집행(제14조의 4) → 제품 등의 수거 등 명령 불이행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82조) ☞



■ 신구조문대비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p>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6.1.27.></p> <p>1.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개월</p> <p>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p> <p>[본조신설 2010.5.25.]</p>	
<p>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p> <p>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7.]</p>	<p>제24조의3(수거등의 권고 절차)</p> <p>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p> <p>[본조신설 2016.7.12.]</p> <p>제24조의4(권고에 대한 결과보고)</p> <p>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p>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2.]</p> <p>제24조의5(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본조신설 2016.7.12.]</p>
<p>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p>	<p>제24조의6(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7.12.]</p> <p>제24조의7(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4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7.12.]</p> <p>제24조의8(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2.]</p>
<p>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p> <p>1. <생략></p> <p>2. 제14조의4제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p> <p>1. <생략></p> <p>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p> <p>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p> <p>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p> <p>2~11. <생략></p>	
<p>제87조(과태료)</p> <p>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p> <p>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 삭제 (2016.1.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9. (생략)	

■ 인증정보망에서 인증취소 정보를 확인하는 법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 접속 후, 오른쪽 중단의 “공지사항” + MORE 클릭



○ 인증 취소 관련 게시물 확인

